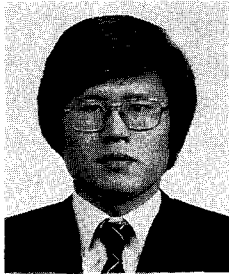


기술발전과 제조물 책임법 (PL Law) <2>



윤 선 희
(상지대학 법학과 교수)

목 차

- I. 처음에
- II.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및 요건
- III. 제조물책임법의 대상
- IV. 기술발전과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 V. 끝으로
- * 부록
 1. 독일 제조물책임법
 2. 일본 제조물책임법
 3. 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EC지침
 4. 영국의 1987년 소비자보호법 속의 제조물책임법 부분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2.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률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②이 법률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당해 제조물에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缺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이 법률에서 “제조업자 등”은 다음의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이하 “제조업자”라고 한다)

2. 스스로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라고 당해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의 표시(이하 “성명 등의 표시”라고 한다)를 한 자 또는 당해 제조물에 제조업자로 인식시키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3. 전호에 기재한 자 이외,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관련형태 기타 사정에서 볼 때 당해 제조물에 그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 책임) 제조업자 등은 그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전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제조물에 있어서 그 인도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면책사유) 전조의 경우, 제조업자 등은 다음의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한 때에는 동조에서 규정한 배상책임이 없다.

1. 당해 제조물을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때의 과학 도는 기술에 관한 지식에 의하여 당해 제조물에 그 결함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2. 당해 제조물이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그 결함이 오로지 당해 다른 제조물의 제조업자 등의 설계에 관한 지시를 따름으로 발생하고 동시에 그 결함의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

제5조(기간의 제한) 제3조에 규정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알고 있었던 때부터 3년동안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이와 같다.

② 전항 후단의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신체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발견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 (시행기일 등)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법률의 시행 후 그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원자력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1961

년 법률 제14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및 선박의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1975년 법률 제94호)』을 『선박의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1975년 법률 제94호) 및 제조물책임법(1994년 법률 제...호)』로 개정한다.

3. 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EC지침(번역문)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공동체이사회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정한 협정 특히 협정 제100조, 위원회에 의한 제안, EC총회의 의견, 경제 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또한 다음의 이유에 의거 본 지침을 채택하였다.

결함제품의 책임소재에 관한 국내법이 가맹국마다 상이함에 따라 공동체시장내에서 경쟁이 제대로 되지 못하며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인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를 서로 다르게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국간에 법률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과하는 것이 전문분야가 증대해가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최신기술에 의한 생산에 수반하는 위험의 공평한 배분이라고 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무과실책임을 공업적으로 생산된 동산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농업생산물과 수렵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당해제품에 결함을 일으킬만한 공업적 성질을 가지는 가공이 되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지침에서

규정하는 책임은 부동산 건설에 사용하는 재료 혹은 부동산의 설비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생산자가 공급한 최종생산물, 부품 또는 원재료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그 생산에 관계한 모든 자에게 책임을 과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이유에서 EC내에 제품을 수입한 자, 성명이나 상표, 기타 자타상품 식별표지의 부착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생산자로 표시한 자나 생산자의 특징이 불가능한 제품을 공급한 자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다.

동일한 손해에 대해 복수의 책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에 입각해서 피해자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손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품의 결함이란, 소비자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이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일반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는가, 아닌가의 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성은 일정한 상황하에서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제품의 오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피해자와 생산자간의 위험의 공평한 분담이란, 생산자가 면책되는 사유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생산자의 책임은 생산자이외의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감될 수는 없다. 다만,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재산에 손해배상 뿐 아니라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산에 대한 보상은 개인이 사용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동산에 한정하며 더욱이 과도한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일

정액까지를 면책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지침은 적절한 경우에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에 의거해서 지불되어야 하는 위자료 및 기타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해자와 생산자 쌍방을 위하여 소를 통해 청구하는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제품은 구식이 되는 한편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설정되고 과학기술의 수준은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러므로 생산자에게 결함에 대해 무기한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당한 기간후에는 책임은 소멸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계속중인 청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소비자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계약상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맹국의 법률제도에 기하여 피해자는 본지침의 규정에 없는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효과적인 보호라는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한 이들의 규정은 본지침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유지된다. 또 이미 가맹국의 특별책임제도에 의거하여 의약제품분야에 있어서 소비자의 효과적인 보호가 이미 달성되고 있는 한 그 제도에 기한 청구는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으로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의 피해 또는 손해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는 가맹국이 특별법으로 책임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한 이런 유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지침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지침에서는 일차농산물과 수렵물에 관해서 제외하고 있는바 소비자보호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제외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가맹국도 있으리라고 본다. 이 경우에는 당해국에서 이러한 물품에까지 책

임을 확대할 수도 있다.

또 생산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생산자는 면책될 수 있다는 규정이 소비자보호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가맹국도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법을 유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면책 조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제약(derogation)을 이용함에 있어 만약 가능하다면 공동체 전역에서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통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공동체의 대기절차(standstill procedure)에 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가맹국의 법적전통을 고려한다면 생산자의 무과실책임에 금전적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상이한 법적 전통이 존재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공동체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동일한 결함으로부터 발생한 사망 및 신체상해의 손해에 대한 전 배상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무한책임의 적용제의 항목은 가맹국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본지침에 의해서 발생된 각국의 조화는 현 단계에서는 불충분하나 보다 나은 조화로의 길은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이사회가 본지침의 운용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한 제언 등을 위원회로부터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제1조 제조자는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2조 본지침에서 '제품'이란 제일차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의미하며, 그 동산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 ① '제조자'란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자 및 제품에 그 성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조자로 표시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② 판매, 대여, 리스 기타 업으로서 배급을 목적으로 유럽공동체내에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자는 본지침상 그 제품의 제조자로 간주하며,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은 제조자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품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수입품에 있어서 그 제품의 제조자 성명은 표시되어 있지만 본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자의 신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다만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해자에 대해서 제조자 또는 그 제품을 자기에게 공급한 자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피해자는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 본지침의 규정에 의해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은 분담 혹은 구상권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① 다음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사람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구비하지 아니한 제품은 결함이 있다.

(a) 제품의 표시

(b) 제품이 그 사용하에 배속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c) 제품이 유통된 시기

② 제품이 유통된 이후에 보다 우수한 제품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제7조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본지침에서 규정한 책임을 부담하

지 아니한다.

(a)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b)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제품이 제조자에 의해 유통된 시점에는 손해를 일으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

(c) 제품이 판매 기타 영리목적의 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제조자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제조, 공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d) 제품의 결함이 당국에서 정한 강제력 있는 규정을 따름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e)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f) 부품 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이 사용된 제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제품 제조자의 제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8조 ① 제품의 결함 및 제3자의 작위·부작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분담이나 구상권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결과 그 손해가 제품의 결함 및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책임은 감면될 수 있다.

제9조 제1조에서 ‘손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2) 결함있는 제품 그 자체 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손해 또는 멸실로서 그 재산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500 ECU를 면책으로 한다.

i) 통상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ii) 피해자가 주로 자신의 개인적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

본조는 무형손해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가맹국은 입법을 함에 있어서, 본지침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출소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 출소기한은 원고가 손해, 결함 및 제조자의 신원을 알게된 날 또는 당연히 알았으리라고 생각되는 날부터 진행을 개시한다.

② 출소기한의 정지 또는 중단을 정한 가맹국의 법률은 본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가맹국은 그 입법을 함에 있어서, 본지침에 의해 피해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그 손해를 일으킨 당해 제품을 제조자가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중에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본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제조자의 책임은, 피해자와의 책임제한 또는 책임배제 조항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13조 본지침이 통보된 시점에 존재하는 계약상 또는 계약 외의 책임에 관한 법규정 혹은 특별책임제도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본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본지침은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손해 또는 손해로서 가맹국에 의해 비준된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① 가맹국은

(a)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지침 제1조의 ‘제품’에 제일차농산물과 수렵물이 포함된다는 뜻을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b)제7조 (e)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유통된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한 경우에도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그 입법상 유지하거나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b)에 규정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맹국은 그 계획중인 법안의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른 가맹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가맹국은, 위원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9개월 후에 위원회가 그 기간내에 당해사항에 관한 본지침의 수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계획중인 법안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전기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가맹국에 대해서 이사회에 그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지 않는 때는 그 가맹국은 계획중인 법안의 실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전기 9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대해서 본지침의 전기수정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국은 그 수정안의 제출일로부터 다시 18개월간 그 계획중인 법안의 실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③ 본지침의 통고일로부터 10년 후, 위원회는 제7조 (e) 및 본조 제1항(b)의 적용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소비자보호 및 공동체시장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상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또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제7조(e)의 존폐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① 각 가맹국은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의 제품에 의한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총액을

7,000만 ECU를 하회하지 않는 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본지침 통고일로부터 10년후에 위원회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총액 제한의 가맹국에 의한 실시가 소비자보호 및 공동체시장의 기능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상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또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본조 제1항의 존폐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본지침은 제19조에서 정하는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①본지침에서 ECU란 (EEU)규칙 제3180-78호 및 개정(EEU)규칙 제2626-84호에서 정하는 대로이다. 국내통화로의 환산은 본지침 채택일의 환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5년마다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공동체에 관한 경제 및 통화의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본지침에서 정한 금액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금액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① 가맹국은 본지침 통고일로부터 늦어도 3년 이내에 본지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맹국은 즉시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는 본지침 통고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가맹국은 본지침이 규제하는 분야에서 이후 제정되는 국내법의 주요 규정의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회는 5년마다 이사회에 본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 및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본지침은 가맹국을 대상으로 한다.